

● 제29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1620, 1621, 1622

### I. 결산안 개요

#### 1.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0. 05. 29.
- 다. 회 부 일 : 2020. 06. 18.

### II. 결산현황

####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90,340백만원
- 징수결정액 : 200,136 백만원
- 실제수납액 : 198,564 백만원
- 불납결손액 : 51 백만원
- 미 수 납 액 : 1,521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2%(전년도 99.2%)임.

##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90,340	200,136	198,564	51	1,521	99.2
일반회계	190,340	200,136	198,564	51	1,521	99.2
세외수입	61,626	73,229	71,657	51	1,521	97.9
경상적세외수입	40,795	44,663	44,620	—	44	99.9
임시적세외수입	20,831	28,565	27,037	51	1,477	94.7
지방교부세	—	100	100	—	—	100.0
지방교부세	—	100	100	—	—	100.0
보조금	127,928	126,269	126,269	—	—	100.0
국고보조금등	127,928	126,269	126,269	—	—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6	539	539	—	—	100.0
보전수입등	786	539	539	—	—	100.0

###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485,681백만원
- 예산증감 : 9,282백만원
- 예산현액 : 494,964백만원
- 지 출 액 : 465,113백만원
- 이 월 액 : 14,070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758백만원
- 불 용 액 : 15,02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0%(전년도 4.6%)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지출잔액 9,900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18백만원, 낙찰차액 760백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746백만원

〈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B)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불용율 (%)
<b>총 예 산</b>	494,964	465,113	14,070	758	15,023	3.0
<b>정 책 사 업 예 산 계</b>	486,302	457,159	14,070	746	14,327	2.9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169,954	155,743	9,651	252	4,308	2.5
시민건강수준향상	128,915	128,494	115	-	305	0.2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10,374	10,062	-	70	242	2.3
생활보건 관리 향상	127,852	120,869	123	100	6,761	5.3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6,585	6,174	109	20	282	4.3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13,311	11,924	386	61	941	7.1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7,604	6,035	1,154	13	402	5.3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은평병원)	7,006	6,811	36	30	129	1.8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서북병원)	14,701	11,047	2,496	201	958	6.5
<b>일 반 예 산 계</b>	8,662	7,954	-	12	695	8.0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8,662	7,954	-	12	695	8.0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13건 446백만원

다. 예산 이체 : 3건 4,142백만원

라. 예산의 변경사용 : 7건 118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1건 143백만원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20건 14,070백만원

- 명시이월 : 4건 2,635백만원

- 사고이월 : 16건 11,435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 수령액 : 126,269백만원

- 집행액 : 124,318백만원

- 이월액 : 1,176백만원

- 집행잔액 : 775백만원

### 3. 기금결산

- 기금조성현황

#### 〈 2019년도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9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식품진흥기금	66,105	△931	3,411	4,342	65,174

- 기금결산현황

〈 2019년도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9,016	계	9,016
융자금회수	384	비용자성사업비	3,112
예탁금회수	-	융자성사업비	1,229
예치금회수	5,605	기본경비	1
이자수입	1,499	기타지출	-
기타수입	1,528	예치금	4,674
		예탁금	-

4. 채권현재액 : 7,274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289,076 $m^2$  737,263백만원,
    - 건물 395,873 $m^2$  489,644백만원,
    - 기타 72건 8,556백만원,
- 총 1,235,463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9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205,847	29,616	-	1,235,463
행정 재산	계	1,205,150	29,615	-	1,234,765
	공용재산	1,038,716	29,564	-	1,068,280
	공공용재산	166,434	51	-	166,485
일반재산		697	-	-	697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말 시민건강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739개, 현재액 13,992백만원

〈 2019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 전환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기타	소계	
합계	수량	736	54	3	31	88	4	62	19	85	739
(일반회계)	금액	15,865	908	4	248	1,160	130	2,716	187	3,033	13,992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세입 결산 검토

#####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903억 4천만으로 2,001억 3천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9.2%인 1,985억 6천4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시효소멸에 따라 5천 1백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 15억 2천 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9년도	190,340	200,136	198,564	51	1,521	99.2
2018년도	193,090	195,488	193,907	79	1,502	99.2
2017년도	159,636	177,306	174,073	20	3,212	98.2

- 징수결정액은 2,001억 3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보다 97억 9천 6백만원(5.1%)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6억5천9백만원이 감소하고 보전수입이 2억4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116억 3백만원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표〉 2019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90,340	200,136	198,564	51	1,521	99.2
일반회계	190,340	200,136	198,564	51	1,521	99.2
세외수입	61,626	73,229	71,657	51	1,521	97.9
경상적세외수입	40,795	44,663	44,620	-	44	99.9
임시적세외수입	20,831	28,565	27,037	51	1,477	94.7
지방교부세	-	100	100	-	-	100.0
지방교부세	-	100	100	-	-	100.0
보조금	127,928	126,269	126,269	-	-	100.0
국고보조금등	127,928	126,269	126,269	-	-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6	539	539	-	-	100.0
보전수입등	786	539	539	-	-	100.0

- 실제 수납액(결산액)은 1,985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1,939억 7백만원) 대비 46억 5천 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짐.
- ‘보조금’의 경우, 전체 세입의 3분에 2에 해당하는 63.59%(1,262억6천9백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36.09%(716억5천7백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 실제 수납액(결산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2017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198,565	100.0	193,907	100.0	174,073	100.0
세외수입	71,657	36.1	67,039	34.57	56,189	32.28
지방 교부세	100	0.05	250	0.13	150	0.09
보조금	126,269	63.59	125,820	64.89	116,628	67.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39	0.27	798	0.41	1,106	0.64

나. 과학적 세입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 운용 필요

-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세입 예산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사유(2019년)
공유재산 임대료	1,613,641	998,939	998,939	△614,702	(서북병원)장례식장 운영난 가중으로 사용허가취소원 제출하여 장례식장 임대료 미부과
기타사용료	39,372	149,966	149,966	110,594	(보건의료정책과 등)(구)시립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발생 등
징수교부금수입	76,154	117,780	117,780	41,626	(질병관리과)먹는샘물 수입량 증가로 인한 징수결정액 증가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사유(2019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결정액=먹는샘물 수입량(m)*2,200원*20%)
기타이자 수입	266,510	476,107	442,648	176,138	(건강증진과 등)자치구 체납 독려 및 정산 발생이자 등 반납
과징금	7,254	1,000	500	△6,754	(동물보호과)업체의 의견제출(과징금 부과 대신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과징금 수납액 감소
위약금	3,108	8,084	8,084	4,976	(보건환경연구원)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증가(7건)
과태료	10,800	19,060	13,772	2,972	(건강증진과)세무과 모바일문자서비스 및 카드결제 독려 등을 통해 징수율이 증가(18년 66.3%→19년 76.4%)
불용품 매각대	26,640	137,473	137,473	110,833	(보건환경연구원 등)고가의 물품(차량4대포함) 불용 등
시·도비반 환금수입	14,423,467	23,766,190	22,565,700	8,142,233	(건강증진과 등)자치구 체납 독려 및 정산 차액 등 반납
그외수입	4,233,588	3,055,227	3,046,775	△1,186,813	(보건의료정책과 등)민간위탁기관 및 민간보조사업자(시립병원 등) 반납 금액 감소
지난연도 수입	1,923,383	1,361,611	1,062,041	△861,342	(건강증진과 등)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인한 부족수납 발생 등

- 2018회계연도에서도 과부족으로 지적되었던 ‘기타 사용료’, ‘기타이자 수입’, ‘과징금’, ‘위약금’,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리고 ‘그 외 수입’에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380%)’, ‘징수교부금수입(155%)’, ‘기타이자수입(166%)’, ‘위약금(260%)’, ‘과태료(130%)’, ‘불용품매각대(516%)’, ‘시도비반환금수입(156%)’ 등은 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되었고
- ‘공유재산임대료(61.9%)’, ‘과징금(6.9%)’ 그 외수입(72%)’, ‘지난 연도수입(55%)’ 등은 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되었음.

- ‘재산임대수입’, ‘기타사용료 수입’, ‘이자수입’과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임.
  - 반면, 재산의 매각과 같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가 단년도 회계 시스템 하에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시민건강국의 2019연도 예산에서는 비교적 추계가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에서도 과수납되거나 과부족되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세입예산은 적정한 자료와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실제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며, 적정한 자금유통의 전망 위에서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행정법상의 금전적 제재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벌적 의미에서 규제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예산을 현실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함.
  
- 2019회계연도에 과징금은 총 2건으로 시민건강국에서는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처분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과부족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사료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각 50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 수납이 50%로 회계연도 말에 부과되어 1건에 대해 연내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결산액의 과부족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표〉 과징금 세입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사유(2019년)
과징금	7,254	1,000	500	△500	(동물보호과)회계연도 말에 부과되어 연내 미납

- 시민건강국에서는 2019년도 과징금 세입 추계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 추계에 30%를 가산하여 추계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영업부진 및 장기 불황 등의 상황에서 추세가 일정하지 않지만, 18년도 징수 전망이 19년도 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세입 예산의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 2019년도 수입 추계 내역-과징금 >

- 2018년 징수전망 ..... 3,000천원
  - '18년 4월까지 징수금액 500천원 + 2,500천원 추가징수 전망
  - 사료관리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 영업부진이나 장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택하는 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징수전망이 어려움
  - 하반기 약 2,500천원 추가 징수 예상
    - 5건 × 500천원(하한) = 2,500천원

□ 2019년 세입추계 ..... 7,254천원

○ 전망 : 관련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예측이 어려우나, '16년 이후 징수액이 급장한 것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 추계에 30% 가산

○ 산출내역

:  $\{(5,198+2,750+8,792) \div 3\} + \{(5,198+2,750+8,792) \div 3 \times 30\% \} = 7,254$ 천원

<연도별 과징금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위반 과징금	5,198	2,750	0	9,816	8,792

○ 시민건강국의 과태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2019년도 과태료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 수납액이 20% 이상 과도한 차이를 보이며 과수납되었음. 시민건강국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관련하여 예산(1천80만원)대비 징수결정액(1천9백만원)이 과다하며, 실제수납액 역시 예산을 초과한 1천3백8만원 임.

<표> 과태료 세입 내역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과태료	10,800	19,061	13,772	△5,289	(건강증진과)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 서울시에서는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71개소에서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의 부과 건수를 보면 약 200여건 정도의 일정한 수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외금연구역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걸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단속 건수가 늘다는 것은 금연정책의 예방적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대신민 홍보를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연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단속규제 행정방식보다는 사전예방 및 계도행정 중심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연도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단속요원 (명)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639	316,390	2,639	217,265	68.7%
2013년	19	1,518	131,830	1,061	86,724	65.8%
2014년	24	488	43,300	360	30,604	70.7%
2015년	24	759	66,610	578	48,495	72.8%
2016년	20	185	16,300	126	10,450	64.1%
2017년	16	203	17,160	144	11,460	66.8%
2018년	16	261	22,300	189	14,992	67.2%
2019년	10	225	18,890	181	14,540	76.97%

※ '20. 6. 2.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준

## 다. 결손처분 관련

- 시민건강국은 주로 과태료를 결손처분한 바 있음. 과태료는 처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 시효중단에 따른 결손처분이 증가하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액의 과태료라 하더라도 처벌적 성격이며 처벌의 결과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를 결과적으로 초래할 경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보다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표〉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시안별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효완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현황
2016	252	(건강증진과 과태료)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시
2017	20,523	(건강증진과 과태료)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시
2018	79,024	(건강증진과 과태료)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시 (생활보건과징수교부금독촉고지현황) -1999년 공중화장실시설 수준 향상 사업 집행잔액 12,087,160원 2002년 2월 독촉고지 -취약시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 2,746,000원 2008년5월독촉고지 -위생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발생분 28,590원 2007년2월독촉고지
2019	51,067	(보건의료정책과 기타사용료) 지속적인 독촉고지 실시 (건강증진과 과태료)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시



## 라. 국고보조금의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교부되며, 교부 시 용도를 지정하고, 일정부분의 지방비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사업내용이 지정되고 지방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음.
- 중앙정부나 관계부서의 일방적인 보조금 변동으로 인한 사업환경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과 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라는 지적 사항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등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일방적 변경할 경우, 매칭비율에 의한 서울시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로 인해 사업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가내시 및 확정내시를 통하여 지급됨. 서울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자료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이후 국고보조금이 과소하게 확정내시 될 경우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 존재한다고 할 것임.
-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과소 교부액은 1,218백만원으로 과소 교부된 총 1,676백만원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국비 매칭 사업의 성격상 국비가 감액되면 서울시비분

을 감액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기회비용 상실 및 예산의 사장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의 사장을 막고 재원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표〉 국고보조금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2019연도)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계	국비	시비	국비수령액	과소 및 과다 교부 금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000,000	2,500,000	2,500,000	2,080,000	420,000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취소에 따라 장비비 반납
2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38,110	119,055	119,055	119,015	40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
3	건강 증진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67,356	383,678	383,678	383,668	10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
4	건강 증진과	모바일 헬스케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24	138,480	41,544	137,640	840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
5	식품 정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40,000	2,280,000	2,660,000	2,250,000	30,000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
6	질병 관리과	주요감염병표본감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1,680	70,840	70,840	68,060	2,780	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 증가로 인한 지원 감소
7	질병	병원감염관리-의료관	사무관리비	2,900	2,900		2,600	300	시도별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계	국비	시비	국비수령액	과소 및 과다 교부 금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관리과	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시도)							표본감시기관 수 차등지급 예산조정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
8	질병 관리과	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05,900	2,405,900		2,371,530	34,370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P PM) 신규인력 축소
9	질병 관리과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2,924	51,462	51,462	46,697	4,765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
10	질병 관리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국가예 방접종 실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5,523,881	36,783,930	48,740	35,601,414	1,182,516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
11	동물 보호과	가축방역-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무관리비	83,232	37,736	45,496	37,590	146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
12			재료비	441,598	323,438	118,160	322,963	475	국비 확정내시 감액 변경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856억8천1백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4,949억6천4백만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4,651억1천3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140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이 7억5천8백만원으로 남은 집행 잔액은 150억2천3백만원으로 나타남.
- 집행 잔액은 불용률은 3.0%로 전년도(2018년 불용률 4.6%) 결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지출잔액 99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억1천8백만원, 낙찰차액 7억6천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7억4천6백만원 등임.

〈표〉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 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19년도	485,681	494,964	465,113	14,070	758	15,003	3.0
2018년도	472,038	477,024	445,461	9,139	53	21,893	4.6
2017년도	438,883	449,285	434,192	4,472	-	10,621	2.4

## 나. 예산의 변경(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출예산이 부족하거나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가 필요하게 된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매년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제도를 두고 있음.

### 〈표〉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장	부서(기관)의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장

- 이러한 예산 변경사용 제도를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남용할 경우, 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의한 예산의 취지와 목적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가 임의적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 변경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예산 변경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보

고, 의회 보고 등 그 절차와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여 집행부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예산변경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것임.

- 시민건강국의 2019회계연도 예산전용 13건(4억4천6백만원), 예산이체 3건(11억4천2백만원), 예산변경 7건(1억1천8백만원), 예비비 사용 1건(1억4천3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예산의 이용, 전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건수	-	13	7	3	1
승인금액	-	446	118	4,142	143

1) 예산의 전용 사례

-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13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용금액은 4억 4천6백만원임. 주로 사업의 운영예산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6건)이며, 근로자 급여 부족분 및 퇴직금 확보(4건), 국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인한 매칭 시비확보(1건), 은평병원 리모델링 용역 및 노후 난방배관 정비비 부족분 확보(2건) 등이 있음.

# <표> 예산의 전용사례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의회보고)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 정책과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2,940	1,470	2019- 04-18 (06.19)	1,470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6,460			1,470
2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9,704,168	70,000	2019- 08-20 (12-17)	1,766,232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100,000			70,000
3	보건의료 정책과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0,000	20,000	2019- 08-28 (12-17)	0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70,000			20,000
4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심리지원센 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317,563	110,000	2019- 08-28 (12-17)	14,690
		서울심리지원센 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0,000
5	건강 증진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60,000	30,000	2019- 08-06 (12-17)	0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0,000			30,000
6	질병 관리과	서울형 유급병가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140,214	54,000	2019- 11-19 (12-17)	3,941,214
		서울형 유급병가	201-02 공공운영비				54,000
7	질병 관리과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206-01 재료비	537,000	22,000	2019- 12-02 (12-17)	16,321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5,400			22,000
8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지원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616,413	16,000	2019- 10-17 (12-17)	71,437
		청사시설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43,235			16,000
9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04,268	17,000	2019- 09-30 (12-17)	58,741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87,653			17,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의회보고)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0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408,961	36,234	-	2019- 12-04 (12-17)	8,269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7,400		36,234		12,110
11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372,727	20,000	-	2019- 12-04 (12-17)	8,269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01-01 시설비	278,000		20,000		1,260
12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352,727	46,174	-	2019- 12-27 (미보고)	8,269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300,240		46,174		6,609
13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307-01 의료및구료비	3,306,553	3,374	-	2019- 12-27 (미보고)	8,269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14,480		3,374		142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이하 “조례”)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조례 제55조의3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며, 단서로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은평병원은 회계연도 말인 12월에 두 차례의 예산 전용을 실시하였으며, 심지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관한 예산전용은 12월 27일에 승인하는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해 체계적인 지출 규모 및 인력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예산 전용을 2019년 12월 27일에 승인하고도 전용시점 이후에 제 291회 임시회부터 295회 정례회까지 5회의 보고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보고를 하지 않았음. 이는 예산의 변경사용 제도가 가지는 탄력성을 악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생계비 지원이 없는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업무 외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시 의료비 및 소득상실의 이중고에 노출되지만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음으로 소득상실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2019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을 시작함.
- 2019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 사업의 세부적인 집행계획 및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져야 하고 집행부 내부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제도로써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실험적인 제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의 기대 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됨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요청하였음.
- 질병관리과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전용의 사유로는 유급병가 신청 안내문 발송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 61억4천만원 중 5천4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것임.

〈표〉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통계목	2019 예산	예산 전용		변경 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0 예산
		증	감			
소계	6,246,214	54,000	54,000	6,246,214	2,304,920	4,037,888
사무관리비	106,000			106,000	106,000 (100.0)	943,000
공공운영비	-	54,000		54,000	53,920 (99.9)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40,214		54,000	6,086,214	2,145,000 (35.2)	3,094,888

○ 또한, 288회 정례회(2019년 6월 19일)에서는 본 예산 41억원을 집행하기도 전에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을 사유로 20억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행복e음 시스템의 활용으로 전산시스템개발비 불필요에 따른 전산개발비 감추경을 실시하였음.

〈표〉 서울형 유급병가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천원)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내역
소계	6,246,214	4,142,352	2,103,862	
사무관리비	106,000	56,000	50,000	
전산개발비	0	160,000	-160,000	행복e음 사용으로 전산시스템개발비 불필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140,214	3,926,352	2,213,862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 확대

- 시민건강국에서는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법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소득·대상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음. 최초 사업 대상자 추계 인원과 달리 2019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하였던 대상자가 상이하였고, 행복e음 등 기존 전산시스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산개발비를 편성하는 등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예산안 심의 및 추경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업검토 기간(2017년부터 준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및 제도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행정편의적인 사업 추진 방법 등으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던 제도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불용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표〉 2019년도 유급병가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인건비	433,000	394,495	38,505	91.1%
일반운영비 등	214,000	213,401	599	99.7%
유급병가지원비	1,498,000	1,127,832	370,168	75.3%
계	2,145,000	1,735,728	409,272	80.9%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되는 사회보장정책으로 그 정책의 실현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음. 그러나, 시행착오와는 별개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정책적 견해 및 지적 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아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서울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시의회와의 협치 및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근로자 급여 부족분 및 퇴직금 확보 등에 따른 예산 변경

- 2019년 예산 전용 및 변경 등의 사유 중 근로자 임금 부족분 확보 및 퇴직금 부족분 등에 따른 변경이 6건 발생하였음. 예산 전용으로 기간제 및 축탁직 근로자의 정년퇴직금 및 임금 부족분 확보 건이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에서 총 4건, 8천 2백만원이었으며, 예산 변경으로 근로자 급여 부족분 확보 및 기간제 당직의 인건비 확보분이 어린이병원과 서북병원에서 총 2건, 4천 8백만원 발생하였음.

〈표〉 예산 전용 및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퇴직금 부족분 확보

(단위: 천원)

구분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예산전용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43,235	16,000	기간제근로자(축 탁직)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87,653	17,000	근로자 급여 부족분 확보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300,240	46,174	축탁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임금 부족분 확보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14,480	3,374	축탁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임금 부족분 확보

구분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소 계					82,548
예산변경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64,653	23,000	근로자 급여 부족분 확보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26,252	25,000	기간제 당직의 인건비 부족분 확보
	소 계					48,000

○ 인건비 편성목은 다른 편성 목으로부터 전용해 올수 있으나 전용을 해 줄 수는 없음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2019년 인건비 항목에 대한 전용 및 변경을 보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항목에 관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었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산정 등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2) 예산의 변경사용 사례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7건으로 변경금액은 1억1천8백만원으로 나타났음. 주된 사유는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변경 사용한 것임

〈표〉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과목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 자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 의료 정책과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000		2019- 03-18	학술용역 추진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207-01 연구용역비		50,000		
2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 지원부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167		2019- 10-17	환율 상승에 따른 외자 장비구매 제경비 부족금 확보
		식품 안전성 검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167		
3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 지원부	가짜식품 판별 검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3,600		2019- 10-17	환율 상승에 따른 외자 장비구매 제경비 부족금 확보
		식품 안전성 검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3,600		
4	보건환경 연구원 연구 지원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4,642		2019- 10-17	조직변경으로 인한 예산소요 증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4,642		
5	어린이 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3,000		2019- 09-30	근로자 급여 부족분 확보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3,000		
6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5,000		2019- 11-27	기간제 당직의 인건비 부족분 확보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5,000		
7	서북병원 원무과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	401-03 시설부대비	10,462		2019- 11-21	기술용역타당 성 심사 결과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 확보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	401-02 감리비		10,462		

- 2019년도 시민건강국의 예산 변경 사용 건 중 ‘서북병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2천 5백만원을 ‘서북병원 고객중심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여 2019년 11월 27일에 변경 승인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변경 사용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2천4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변경 승인일이 11월 말로 연말에 해당되어 기간제 당직의 인건비 부족분이 비교적 정확히 산출될 수 있는 시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금액의 대부분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다는 것은 인력에 대한 집행계획의 얼마나 불명확하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예산 변경 후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변경사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 로자등보 수	286	25		2019- 11-27	기간제 당직의 인건비 부족분 확보	261	219	42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 스 제공	101-04 기간제근 로자등보 수	126		25			151	127	24

- 예산의 변경사용의 경우에는 세부사업간의 예산을 변경하고, 그 책임성이 실·국장에게 있어서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결산시기가 되지 않으면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점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의회의 예산심의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앞으로 단위사업의 통계목을 신설하거나 주요 통계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가할 경우 의회의 회기 중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3) 예산의 이체

- 예산이체 「지방재정법」 제47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 조례, 제정, 개폐 시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3건으로 금액은 41억4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19.1.1)에 따른 시민건강국 사업 소관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주무 부서를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질병관리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함.

〈표〉 2019연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회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유급병가	사무관리비	56,000	56,000		2019-03-04
일반회계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서울형 유급병가	사무관리비			56,000	
일반회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유급병가	전산개발비	160,000	160,000		2019-03-04
일반회계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서울형 유급병가	전산개발비			160,000	
일반회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유급병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26,352	3,926,352		2019-03-04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 회계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서울형 유급병가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926,352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경우 시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개발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추진과 정밀한 검토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변경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후관리 및 전문성을 이유로 담당과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나, 2019년도 사업의 진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음.

<제285회 임시회 중(2019.03.04.)>

○김소양 위원 : 덧붙여서 소관부서가 질병관리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 이게 지금 단순하게 처음에는 의료보장 측면에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다가 여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하게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건강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실제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건강국의 보건의료정책과가 아닌 질병관리과로 이관을 하면서 노동자 건강증진과 관련된 그러니까 유급병가 지원 후에도 사후적인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고자…….

○김소양 위원 .... 사후관리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유급병가 수급을 받아서 검진이라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입원, 외래를 이용한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계층의 건강통계라거나 이런 걸 산출하고 또 그 계층의 건강관리가 지역별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치구랑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으신 건 아니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이것이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고 또 사실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를 처음 실시한다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질병관리과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 과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은 비록 과가 바뀌고 그 문제, 과는 바뀌었습니다만 성공적인 안착이나 제도시행에 있어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기존에 없던 정책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음.

#### 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월제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과 지출원인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허용하는 사고이월이 있음. 명시이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허용되나, 사고이월은 재사고 이월 할 수 없음.

〈표〉 이월 제도의 구분

구 분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요구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결정	예산의 의회의결	자치단체장	예산으로 의회의결
이월액 확정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요구
이월액 확정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성격	사전 결정	사업추진과정	사전 결정
재이월	사고이월 가능	불가	의회의결, 재이월, 사고
사업진행 기간	2년 단, 사고이월 시 3년	2년 지출원인행위액 단, 부대경비 등은 가능	5년 단, 사고이월 시 6년
이월금액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의 경우 예외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 연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차년으로 넘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됨.
-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원인행위만 한다면 행정편의적으로 사고이월하는 등 예산 사용의 예외적 사유를 상시적 사유로 이용하여 예산의 적기 수행이라는 책임을 면책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표〉 예산의 사고이월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1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 터 건립	시설비	11,593,352	10,336,180	3,748,373	6,580,334	지장물 제거 공사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 필요
2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 터 건립	감리비	1,057,200	631,000	299,792	331,000	지장물 제거 공사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 필요
3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 터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3,990	3,990	6,010	지장물 제거 공사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사고이월 필요
4	서울심리지원센 터 운영	사무관리비	110,000	99,000		99,000	심리지원 인식개선 공익광고 용역은20년 2월 준공 예정
5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60,000	51,701	26,755	24,947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사고이월 필요
6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00,000	92,629	2,379	90,250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사고이월 필요
7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사무관리비	533,990	512,160	389,135	123,025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8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시민참여)	자산및물품 취득비	220,000	163,115	54,215	108,900	시민참여 예산으로, 사업계획 수정을 위한 사업 제안자와 협의로 용역발주 지연되어 사고이월 필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9	미세먼지 감축기반 시설 유지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1,606,000	1,538,482	1,152,883	385,600	환경부 인증제 시행 이전 신뢰성 있는 간이측정기 선정절차(자체 성능평가, 시범사업추진)등으로 착수 지연되어 사고이월 필요
10	어린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록(E MR) 교체	전산개발비	1,261,721	1,154,482		1,154,48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유찰 등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사고이월 필요
11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53,634	53,573	17,438	36,135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사고이월 필요
12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751,367	1,730,120	1,710,820	19,300	물품구매 절차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내 물품 납품 및 검수 등 곤란하여 사고이월 필요
13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1,700,500	1,662,559	1,537,678	124,88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14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	시설비	2,730,000	2,437,323	152,886	2,284,436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15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	감리비	60,462	57,430		57,43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16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	시설부대비	9,538	3,421		9,538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필요

- 2019년도 시민건강국에서는 16건에 114억3천5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표〉 시민건강국 연도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7년도	6건	6,401	3,563	1,772	1,808
2018년도	16건	15,517	10,376	5,306	4,736
2019년도	16건	22,858	20,527	9,096	11,435

- 지난 3년간 시민건강국에서의 사고이월 건수만을 살펴보다라도 매년 그 건수와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음. 2019년도 사고이월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및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용역발주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19년도 시민건강국 사고이월액은 총 114억3천5백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현액(4,949억6천4백만원) 대비 2.8%에 해당하고, 2018년도 사고이월금액 47억3천6백만원의 2.5배에 달하고 있음.
  - 이월금액의 증가는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예산은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편성하고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에는 사업집행 분석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 등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 라. 예산 불용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필요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됨.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치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예산의 불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동의 하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명분이나,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 양태로 평가할 수 있음.
-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신규기관 미선정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있어 집행부의 적극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겠음. 사업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을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어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게 되는 바,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2019년도에 시민건강국에서는 31개 사업에서 1억원 이상을 불용하였으며, 총액은 278억2천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 현액(4,949억6천4백만원) 대비 5.62%에 해당하며, 1억원 이상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집행잔액 등이라 밝히고 있음으로 추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6개 사업으로 175억8천1백만원으로 1억원 이상 불용사업 총액의 63%를 차지하는 등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있어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불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많은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한 바, 집행에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시민건강국 1억원 이상이월액 포함 불용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	보건 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20,342	19,493	849	4.17%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 취소에 따라 장비비 반납(연내 환급)
2	보건 의료 정책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 센터 건립	12,660	4,052	8,608	67.99%	기반공사 시 지장물 제거 등으로 인해 공기가 약 2개월 가량 순연으로 이월함
3	보건 의료 정책과	건강돌봄서비 스 제공체계 구축	4,846	4,422	424	8.75%	보건지소 신규 공모(설치 규모 등) 결과에 따라 지원 후 집행잔액
4	보건 의료 정책과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1,000	51	949	94.90%	학술용역 지연에 따라 세부운영 계획수립 순연되어 이월함
5	보건 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7,073	6,574	499	7.05%	입소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정원 700명/현원600명)
6	보건	정신재활시설	20,094	18,288	1,806	8.99%	신규시설 시설 신청이 없고,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 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의료 정책과	운영보조					2개소 폐지
7	보건 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아이존) 운영	3,892	3,674	218	5.60%	신규 아이존 1개소 확대예정이었으나 적합한 기관 선정되지 않아 불용액 발생
8	보건 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보조	567	443	124	21.87%	종사자 인건비 잔액 및 이용자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9	보건 의료 정책과	서울심리지원 센터 운영	1,318	1,193	125	9.48%	심리지원 인식개선 공익광고 용역 시행(예산 이월)
10	보건 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218	52	166	76.15%	서울주택도시공사 협업사업으로 입주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 11월부터 운영 자치구 인력
11	건강 증진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24,186	23,997	189	0.78%	미확보(간호직공무원)로 미교부된 집행잔액
12	식품 정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1,262	1,158	104	8.24%	대상인원(학생수) 감소, 최저가 낙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13	질병 관리과	서울형 유급평가	6,246	2,305	3,941	63.10%	○ 당초 기준중위소득 100% 선별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 소득·재산 평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복잡한 서류 제출 요구 및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 장애요인 발생 *'19.6.1사업 시행, 통상적으로 10~12월 건강검진 많음 ○예산추계시, 신규사업임에도불 구하고초기사업대상신청률을3 0%로책정,근로조건3개월,건강 보험지역가입자격3개월,서울시 거주기간등다소엄격한선행조건 으로실제신청율이이에못미침
14	질병	MERS,	1,061	897	164	15.46%	○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 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관리과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및 현장 컨설팅 용역 관련 사고이월 발생((123,025천원)
15	질병관 리과	결핵관리-보 건소결핵관리 사업	5,176	5,070	106	2.05%	-
16	질병 관리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국가예방접 종 실시	85,524	82,962	2,562	3.00%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2019.10.17.)에 따라 잔액 발생 -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율 (국:시:구=30:35:35) - 변경전 국:시=36,783,930천원 : 48,739,951천원 - 변경후 국:시=36,601,414천원 : 47,360,290천원 - 잔액 국비 1,182,516천원 + 시비 1,379,661천원
17	동물 보호과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433	307	126	29.10%	3월말 사업시작으로 보험가입 대상 감소 및 유기견 발생감소에 따른 입양건 감소로 보험 대상이 줄었음
18	동물 보호과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시민참 여)	500	334	166	33.20%	시민참여 예산으로, 사업계획 수정을 위한 사업 제안자와 협의로 용역발주 지연되어 사고이월
19	보건 환경 연구원	대기 오염물질 검사	1,500	1,252	248	16.53%	대기오염측정관련 용역비 가동률 산출에 의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20	보건 환경 연구원	미세먼지 감측기반 시설 유지관리	1,606	1,152	454	28.27%	착수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385.600,000원)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
21	보건 환경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191	1,983	208	9.49%	측정기기의 신규 도입(대기, 실내) 등으로 인한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의 감소(검사 유예)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 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22	보건 환경 연구원	기본경비	2,155	1,912	243	11.28%	불필요한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23	어린이 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513	1,344	169	11.17%	
24	어린이 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3,916	3,815	101	2.58%	
25	어린이 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의료정보시스 템 전자의무기록 (EMR) 교체	1,270	0	1,270	100.00%	발주 사전 준비 및 계약지연(2회 유찰) 등으로 사업추진 일정 지연되어 사고 이월 발생 (계약체결및원인행위완료)
26	어린이 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1,297	1,156	141	10.87%	
27	은평병 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4,350	4,229	121	2.78%	
28	서북 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066	3,769	297	7.30%	1.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결과조치 시 서북병원 건물은 특이사항 미발생, 병원 내 교회는 E등급 판정으로 철거해야 하나 개발제한구역(은평구 소관)에 따른 미집행 2. 수배전반교체공사및방수공사, 스프링클러설치용액계약낙찰차 액발생
29	서북 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6,886	6,260	626	9.09%	급식 및 간병인 파견용역 계약 낙찰차액 발생
30	서북 병원 원무과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	2,800	153	2,647	94.54%	설계용역 유찰, 용역기간 연장 및 과업내용서 변경 등으로 사고이월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31	서북 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2,280	2,111	169	7.41%	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비용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 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 본 사업은 2015년 지방의료원 최초로 서울의료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 동북권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위한 응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권역에서의 응급환자 진료 및 감염진료 기능 수행을 위해 전액 시비 사업을 응급의료센터 건립이 계획됨.

#### < 사업 추진 개요 >

- 사업명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증축
- 기본방향 : 응급환자 진료 및 감염진료 기능 수행
- 위치 : 중앙구 신내로 156 (대지면적 38,012.1 m<sup>2</sup>)
- 지역 및 지구 : 주거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내2지구), 종합의료시설

-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예산액은 53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2억9천6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6억6천만원이고, 이 가운데 40억5천2백만원이 집행되고 69억1천7백만원이 사고이월, 16억8천9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0억8천1백만원이 불용처리됨.

〈표〉 최근 3년간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사고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년도	통계목	예산액 (본예산)	전년도 이월사 업비	예산현 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명시 이월액	집행 잔액
2017	401-01 시설비	3,536	-	3,536	239	673	2,594	30
	401-03 시설부대비	100	-	100	13	2	70	15
	소계	3,636	0	3,636	252	675	2,664	45
2018	401-01 시설비	4,506	3,266	7,773	773	2,594	4,403	3
	401-02 감리비	631	0	631	0	300		331
	401-03 시설부대비	0	86,669	87	12	0	0	74
	소계	5,137	89,935	8,491	785	2,894	4,403	408
2019	401-01 시설비	4,597	6,996	11,593	3,748	6,580	1,264	
	401-02 감리비	757	300	1,057	300	331	426	
	401-03 시설부대비	10	-	10	4	6	-	-
	소계	5,364	7,296	12,660	4,052	6,917	1,690	0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2015년 보건복지부 신규 선정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18년 6월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7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추진계획으로 건립을 시작함.

- '16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17년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시

행계획 수립, '18년 설계용역 준공, '19년 공사착수를 착수하여 '20년 4월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 진행중임.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추진 경위>**

- '15.11.~12 :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 및 지정
- '16. 05.10.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계획 수립
- '16.05.10.: '16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적정)
- '16.07.27. : '16년 제3차 투자심사(조건부 추진)

**< 추진 조건 >**

- ◎ 본 사업은 현 서울의료원 인근에 연면적 4,350㎡(지하1층~지상4층)규의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서울 동북권 내 응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수용 시민의 중증응급의료 서비스 수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조건으로 추진
    - 전체 시립병원 신규 투자계획(약 1,700억) 우선순위 및 시기조정
    - 대피 등 안전시설 고려, 예산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진.

- '16.09.09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획 의결(시의회)
- '16.11.~12. :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TF 팀 회의 개최(3회)
  - ※ TF팀 구성 9명(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건축가)
- '16.12.06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 적정(조건수 : 설계용역비 조정 등)
- '16.12.22. :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적정성 사전검토 회의
- '17. 01.25.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 '17. 02.17. : 제20차 건설기술심의(용역발주심의) 결과 조건부 채택
  - ※ 조건부채택(현장 이해가 되는 현장설명 자료 등 보완)
- '17. 05. 01. : 권역응급의료센터 설계공모 발표(도시공간개선당)
  - ※ 당선작 : 주)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안정웅)
- '17. 05.18.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 용역기간 : "17.5.18. ~ '18.4.17(11개월)
- '18.03.16. : 권역응급센터 건립사업 추진 업무회신(서울의료원)

- 기존 의료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건립방안 제시

○ '18. 10. 31. : 설계용역 준공

※ '18.10.31. 설계용역 준공시, 건축법 제2조5항5호에 의거, 지하층→지상층으로 변경

○ '19.02.11. : 공사 착수

○ '19.11.06. : 1차수 공기연장 계약

○ '19. 12.06. : 총차 · 1차수 변경 계약, 2차수 공사 계약

○ '19. 12. 09 :1차수 공사완료, 2차수 공사 진행중(공정률 49%)

○ '20.01.13. : 응급의료센터 증축 재심사 요청(서울의료원)

- 건립중인 응급의료센터의 2개층 증축 추진에 따른 투자신사 의뢰

○ 하지만 최초의 투자심사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센터의 총 면적 및 규모, 병상 등의 계획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증가되는 등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음.

- '16년 제1차 투자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었으나, 재원확보와 관련한 계획 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가 있음.

### 〈표〉 투자심사 이후 사업 계획 변경 과정

(단위 :백만원)

구분	'16년 서울시 투자심사(3차) 확정 계획 ('16.8.)	'17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과 재방침 계획 ('17.8.)	'18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과 재방침 계획 ('18.3.)	'18년 최종 설계 및 공사 진행 중 ('18.10~)	'20년 추가 증축 계획 ('20.1.)
예산	18,892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4,212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2,40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17,728백만원)	28,078 (공유재산가 미포함 시 23,398백만원)
총 면적	4,350m <sup>2</sup>	5,999m <sup>2</sup>	3,750m <sup>2</sup>	3,670m <sup>2</sup>	4,950m <sup>2</sup>
규모	총 5층 (지상 4, 지하 1)	총 6층 (지상 5, 지하)	총 3층 (지상 2, 지하)	총 3층 (지상 3)	총 5층 (지상5)



구분	'16년 서울시 투자심사(3차) 확정 계획 ('16.8.)		'17년 서울시 보건 의료정책 과 재방침 계획 ('17.8.)		'18년 서울시 보건 의료정책 과 재방침 계획 ('18.3.)		'18년 최종 설계 및 공사 진행 중 ('18.10~)		'20년 추가 증축 계획 ('20.1.)	
	구분	병상	구분	병상	구분	병상	구분	병상	구분	병상
병상	응급의료센터	34	응급의료센터	31	응급의료센터	27	응급의료센터	27	응급의료센터	27
	증환자실	12	증환자실	12	증환자실	12	증환자실	12	증환자실	12
	일반병상	31	일반병상	20					일반병상	20
	합계	77	합계	63	합계	39	합계	39	합계	59

- 서울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도 계획단계에서부터 매해 사고 월과 명시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7 회계연도에는 권역응급센터 건립사업은 그동안 투자심사, 설계공모, 사용자 중심의 공간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 의료법 개정내용 사업에 반영 등을 사유로 시설비 등 26억6천4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7천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2018 회계연도에는 설계용역에 따른 사업규모 재조정(연면적,층수 감소)으로 인해 설계용역기간 연장(기한'18.4.29. → '18.9.30.)으로 공사 지연 되어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19 회계연도에는 지장물 제거 공사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사고 이월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표〉 '서울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사업' 연도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년도	당해연도 편성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2017	3,636	0	3,636	252	675	2,664
2018	8,773	3,267	12,039	1,025	3,569	7,067
2019	22,143	13,530	35,671	5,798	13,718	15,398

- 이월의 타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잦은 이월의 반복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집행부는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 시민들의 응급의료 요구 발생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라. 예비비 사용

- 시민건강국은 예비비로 1건, 1억4천3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예비비 사용 사유는 행정소송에 따른 지출이라고 밝히고 있음.

### 〈표〉 시민건강국 예비비 사용

(단위: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배상금등		143,289	143,289	260	행정법원 조정 권고안 수용에 따른 반환금 지급

- 은평병원 정신보건센터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서울시는 은평구에 최종 소송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43백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음.

- 은평구보건소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은평병원과 위·수탁 계약하여 진행해 왔으며, 2016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액이 수차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하여 횡령 사건이 밝혀지게 됨.
- 해당 사업의 경우 시비와 구비가 50%:50%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원고인 서울시가 보조금반환 금액(287,157,024원) 중 50%에 대해 반환 조정 권고됨에 따라 은평구로 반환하고, 서울시는 횡령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손해배상액 청구를 위해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은평병원 소제기 경과보고

번호	일 자	시 행 기 관	주 요 내 용	비 고
1	'17.2.	은평구청	횡령사실 인지	
2	'17.3.17.	은평구청	서울은평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	
3	'17.8.8.	은평구청	횡령액 보조금반환명령 행정처분	326,786,103원
4	'17.8.17.		횡령자 징역 2년6개월 확정	
5	'18.8.3.	원고소송대리인	소송접수	2018구합73577
6	'18.11.28.		횡령자 반납액 등 39,628천원 중 50%인 19,814천원 서울시로 반납	최종 소송금액 287,157,024원
7	'19.4.29.	서울행정법원 제6부	원고(서울시)는 피고(은평구청)에게 143,578,512원 반환 조정권고	최종 소송금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8	'19.5.17.	서울특별시	조정권고에 대한 의견 제출(수용)	보건의료정책과-15881
9	'19.12.		피고 최수진 만기 출소	
10	'20.1.23.	서울특별시	최수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접수	
11	'20.5.8.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은평구보건소는 “센터 운영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센터 인력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인력을 공개 채용해서 은평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정신건강센터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등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바, 센터운영 및 직원의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하고 지출 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협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3 기금 결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음. 전년도말 조성액은 661억 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1천 1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3억 4천 2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51억 7천 4백만원임.

〈표〉 `19 식품진흥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2019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⑤=①+②
	②=③-④	③	④		
식품진흥기금	66,105	△ 931	3,411	4,342	65,174

- 2019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의 주요 원천은 ‘예치금회수(62.2%)’과 ‘이자수입(16.6%)’, 그리고 ‘기타수입(16.9%)’ 등으로 구성되고,
  - 지출은 주로 ‘비용자성사업(34.5%)’와 ‘예치금(51.8%)’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19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비율(%)	구 분	금 액	비율(%)
계	9,016	100.0	계	9,016	100.0
융자금회수	384	4.3	비용자성사업비	3,112	34.5
예탁금회수	-		융자성사업비	1,229	13.6
예치금회수	5,605	62.2	기본경비	1	0
이자수입	1,499	16.6	기타지출	-	
기타수입	1,528	16.9	예치금	4,674	51.8
			예탁금	-	

- 기금이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됨.
  -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집행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최소화해야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리·운용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짐.
- 반면 기금의 경우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에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사업이 여러개인 관계로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이 결정되는 등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또한 동 기금의 운영에 있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영가능한 사업들이 다수 있는 바 재정융자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